

농업재해 복구비용 현실과 괴리

고가의 종축도 일반가축 수준 책정

태풍과 장마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폭우로 인한 농축산인들의 피해가 최고조에 달해있지만 ‘농업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재기를 꿈꾸는 농가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6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가 개정 고시되면서 정부는 재해복구비용이 인상됐다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실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생축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현 시세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생축 종류와 육성기준도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

한우의 경우 큰소 생축가격이 4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과 달

보상가는 140만500원이 책정돼 있어 28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송아지가격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큰소 보상금으로 송아지 한 마리도 구입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체계는 다른 축종에서 더욱 심각한데 젖소를 단지 송아지와 육성우로 분류하고 있어 송아지, 큰송아지, 초임단계, 초임만삭, 초산우, 다산우 등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적어도 송아지, 큰송아지, 착유우 정도로 세분화해

야 한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그나마 주요 축종들은 성축과 새끼를 2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보상하고 있지만 기타가축의 경우 성축과 새끼 모두 단일 보상가가 책정돼 있는 상황이다.

육계와 산란계도 병아리와 중추만으로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어, 고가의 종계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오리도 새끼오리와 중추로만 분류돼 있어 외국에서 전량 수입되고 있는 고가의 종오리도 일반 육용 실용오리 보상가인 1288원이 보상의 전부다.

가금업계에서는 일반 실용닭 실용오리와는 가격과 기능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종계와 종오리를 실용계와 실용오리 수준에서 보상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실제 보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양계협회 이종길 전무는 “현재 협회로 보고된 폐사종계가 4만수를 넘어서었다”며 “실용계를 생산하는 어미 닭인 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보상체계로 농가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종계의 가격이나 기능 등 특수성을 감안해 농림부는 보상체계를 다시 보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축산경제신문 김재민 기자 jmkim@chukkyung.co.kr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6년 6월 일
농림부장관

2006년 농업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

구분	공종	규격	단위	단가	
1. 양곡대	생계지원	1) '05년산(정부미80kg)	5가마	736,700	
2. 농경지	농경지	2) 유 실	m ³	5,660	
		3) 매 물	"	2,940	
		4) 경운초지	ha	3,854,000	
		5) 불경운초지	"	2,763,000	
		3. 농림시설	비닐하우스	6) 철골펄트온실	m ²
7) 철골유리온실	"			117,390	
8) 자동화비닐하우스	"			30,800	
9)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			7,940	
10) 철재파이프하우스(H-K형)	"			9,400	
11) 철재파이프하우스(A-1형)	"			3,330	
12) 철재파이프하우스(B-1형)	"			3,550	
13) 목재하우스	"			3,420	
14) 죽재하우스	"			2,280	
버섯재배사	15) 병버섯재배사			m ²	403,000
	16) 판넬재배사			"	151,000
	17) 간이재배사			"	75,000
인삼재배시설	18) 차광시설(A형)			m ²	2,240
	19) 차광시설(B형)		"	2,150	
과수재배시설	20) 덕시설		m ²	1,720	
	21) 지주시설		"	770	
	22) 방조망		"	1,600	
	23) 관수시설		"	980	
	4. 농림부대시설		농산물저장창고	24) 일반저장	m ²
농산물저장창고			25) 예냉 및 저온저장	"	800,000
농산물건조시설			26) 저장능력기준	"	562,500
농기계보관창고			27) 마을공동보관	"	177,000
5. 농림시설철거비			28) (필요할 경우)		재난지수의10%
6. 농작물	대파대	-일반작물	29) 무, 배추기준	ha	2,204,286
			30) 엽채류	"	2,968,000
	-시설채소	31) 과채류	"	3,920,000	
		32) 묘삼기준	ha	15,051,400	
		-인삼			

구분	공종	규격	단위	단가
	-과수	•묘목기준	ha	
		33)사과	"	10,062,640
		34)배	"	2,620,240
		35)복숭아	"	2,179,520
		36)포도	"	1,812,720
		37)단감	"	1,960,000
		38)감귤	"	2,940,000
		-화훼	•종구, 종묘기준	ha
	39)백합		"	28,324,800
	40)안개초		"	12,000,000
	41)장미		"	15,120,000
	42)국화		"	10,970,400
	43)선인장		"	21,365,400
	44)카네이션		"	46,114,600
	-버섯류 농약대	45)글라디올러스	"	19,586,000
		46)심비디움	"	27,692,000
		47)종균기준	ha	42,000,000
48)일반작물		ha	49,940	
49)채소류		"	177,070	
50)과수류		"	313,000	
51)인삼(신설)		"	146,580	
7. 축사	우사	52)한육우사	m ²	121,000
		53)유우사	"	158,000
	돈사	54)번식돈사	m ²	239,500
		55)비육돈사	"	165,000
	계사	56)산란계사	m ²	200,500
57)육계사		"	168,500	
간이축사	58)철재(파이프보온덮개형)	m ²	39,000	
8. 축사부대시설	분뇨처리시설	59)한육우	m ²	78,500
		60)젖소	"	78,500
		61)돼지	"	78,500
		62)닭(평사)	"	78,500
		63)닭(케이지)	"	78,500
9. 잠실	치잠공동사육사	64)케리아잠실	m ²	217,700
	애누에공동잠실	65)브럭 및 패널형	"	116,900
	일반잠실	66)부록형	"	108,900
	조상육잠실	67)조립식	"	19,250
10. 가축입식	한우	68)송아지	마리	1,400,500
		69)육성우	"	1,560,000
	젖소	70)송아지	마리	406,000
		71)육성우	"	1,234,000
	돼지	72)자돈	마리	62,000

구 분	공 종	규 격	단 위	단 가
	육 계	73)육성돈	"	139,000
		74)병아리	마리	427
	산란계	75)중 추	"	740
		76)병아리	마리	611
	염 소	77)중 추	"	1,877
		78)자 양(3개월령)	마리	89,000
	토 끼	79)새 끼	마리	3,800
	오 리	80)새 끼(육용종)	마리	664
		81)중 추(육용종)	"	1,288
	꿀 벌	82)개량종	군	140,760
	인공사육(평)	83)병아리(2~4개월령)	마리	1,665
	사 슴	84)자육	마리	390,000
	말	85)조랑말(망아지포함)	마리	528,000
	개	① 86)강아지	마리	15,000
		87)병아리	마리	2,500
	거 위	88)병아리	마리	2,500
	메 추 리	89)새끼	마리	100
	금 계	90)병아리	마리	30,000
	은 계	91)병아리	마리	75,000
	백 한	92)병아리	마리	40,000
	공 작	93)병아리	마리	250,000
	지 령 이	94)	평	6,000
11. 누 예	누 예	95)봄누예	kg	8,108
		96)가을누예	"	8,108

주

① 본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나 농업관련 시설물은 유사품목 또는 시설의 단가를 적용한다.

② 가축의 육성 가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한우, 젃소 : 12개월령 이상 또는 250kg 이상

나. 돼 지 : 120일령 이상 또는 60kg 이상

다. 육 계 : 20일령 이상 또는 600g 이상

라. 산란계 : 70일령 이상 또는 850g 이상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농림부 고시 2005-45호, 2005. 6. 28)는 이를 폐지한다.